무인비행장치(드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드론은 이제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분야까지도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콘텐츠에서는 드론 장치신고, 드론 안전성 인증, 드론 보험 및 드론 비행절차와 조종자 준수사항 등 안전한 드론 사용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1
1. 드론 이해하기 4
1.1. 드론 알아보기 4
1.1.1. “드론”이란? 4
2. 드론 비행 전 준비절차 8
2.1. 드론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등 8
2.1.1. 드론 장치신고 8
2.1.2. 드론 사업등록 10
2.1.3. 드론 보험가입 12
2.2. 드론 안전성 인증 13
2.2.1.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13
2.3. 드론 조종자 증명 15
2.3.1.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15
3. 드론 비행하기 18
3.1. 드론 비행승인 18
3.1.1. 비행승인 신청 18
3.1.2. 특별비행승인 신청 20
3.2. 드론 항공촬영 22
3.2.1. 항공촬영 신청 22
3.3.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23
3.3.1. 조종자 준수사항 23

1. 드론 이해하기

1.1. 드론 알아보기

1.1.1. “드론”이란?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드론의 정의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 무인동력비행장치
  - √ 무인비행선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 √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 **※ 드론의 어원**
>
> 무인비행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벌의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드론(Drone: 꿀벌의 수컷)’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
> 193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격연습용 비행체인 ´퀸비(Queen-Bee)´를 개발하였으나, 여왕의 나라 영국에서 여왕벌이라는 무인비행장치를 포격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퀸비’를 수컷벌인 드론(Drone)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
> <출처: 한국소비자원, 『드론 안전실태 조사결과』(2017.6.), 3쪽 참조>

> **Q. 완구·레저용 드론(토이드론)이란?**
>
> **A. 250g 이하**의 드론은 **완구·레저용 드론**으로,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구용 드론이라도 비행 가능 지역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10. 1.),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참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구분		내용
초경량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는 적용하지 않음) ①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115kg 이하일 것 ②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③ 좌석이 1개일 것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계류식(繫留式)기구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탑재량 19리터 이하 요건(「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나목)은 제외]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탑재량 19리터 이하 요건(「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나목)은 제외]을 갖춘 비행장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그 밖의 비행장치	·자체중량 150kg 이하의(연료·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드론)』에서의 드론의 범위

현행법상 무인비행장치(드론)는 무게 및 규격 등을 기준으로 장치신고 의무,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및 비행승인 등의 안전관리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드론의 범위는 "**완구·레저용 드론(250g 이하)을 제외**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으로 한정하고, 편의상 용어를 "**드론**"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출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민원시스템 안내-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2. 드론 비행 전 준비절차

2.1. 드론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등

2.1.1. 드론 장치신고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준

▪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 소유자등”이라 함)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본문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7호의2).

구분	최대이륙중량 기준*				
	250g 이하 (완구용)	250g 초과 2kg 이하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비영리	X	X	O	O	O
영리	O	O	O	O	O

* 자체중량 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에 적용

Q1. 드론을 구매했는데 기체신고를 해야하나요?

A1.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정보마당-FAQ>

Q2. 드론의 사용용도(영리, 비영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드론이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드론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영리에 해당합니다.

드론 사용사업의 경우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합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정보마당-FAQ>

Q3.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은 무엇인가요?

A3. “**자체중량**”은 연료, 장비(비행과 관련 없고 탈부착 및 적재가능한 것: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 약제,

>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이며,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말합니다.
>
> <출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2021.)>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신고방법 및 절차

▪ 드론 소유자등은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드론인 경우에는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 별지 제116호서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참고).

1.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2. 드론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cm, 세로 10cm의 드론 측면사진(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 신고번호를 해당 드론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5항제4호).

신고된 드론의 정보(소유자 성명·주소, 용도 등)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변경·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이전신고의 기준

▪ 드론 소유자등은 신고한 드론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

1. 드론의 용도
2. 드론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드론 보관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2항·제3항).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신고된 드론이 분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소신고의 기준

▪ 드론 소유자등은 신고한 드론이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제1항 및 별지 제116호서식).

▪ 드론 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드론 소유자등에게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해당 드론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6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제3항).

▪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드론 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드론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7항).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드론 소유자등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7항제1호).

2.1.2. 드론 사업등록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 교육 등의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신청

▪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요건

▪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 자본금(법인) 또는 자산평가액(개인)이 3천만원 이상(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 조종자 1명 이상
- 드론 1대 이상
- 드론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48조제3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위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7.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위 6.에 해당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10. 임원 중에 위 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1. 드론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위 6.에 해당하여 드론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2.1.3. 드론 보험가입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보험가입의무 대상

▪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5항).

▸ 대인배상책임: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

▸ 대물배상책임: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보험보상한도

▪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및 별표 1·별표 2).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책임	사망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대물배상책임	2천만원(사고 1건당)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사업법」 제84조제2항제21호).

2.2. 드론 안전성 인증

2.2.1.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이란?

▪ "안전성 인증"이란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항공안전기술원)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모델별인증	무인동력비행장치 초도 안전성인증의 한 종류로 무인동력비행장치 형식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함을 검증하고 해당 제작자 품질시스템을 확인하는 인증

안전성 인증의 대상

▪ 다음의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제305조제1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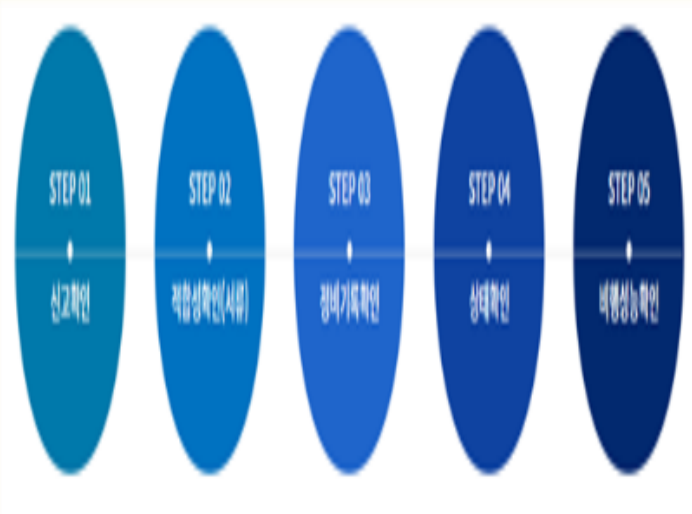
안전성 인증대상	최대이륙중량 기준					
	250g 이하 (완구용)	250g 초과 2kg 이하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12kg 이하	12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무인동력 비행장치 (자체중량 150kg 이하)	X	X	X	X	X	O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80kg 이하)	X	X	X	X	O	O

※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 신청절차

▪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기술원)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5조제1항).

※ 안전성 인증절차



<출처: 항공안전기술원-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은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할 때에는 해당 드론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5조제2항).

> ※ 드론 안전성 인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의 장은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시험, 계산 또는 입증자료의 제시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성 인증검사를 위하여 제출되거나 보관되어야 하는 기술자료는 서면 자료 또는 전자식 자료(Electronic Data)로 할 수 있습니다(「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5조제3항·제4항).

> ※ 드론 안전성 인증신청은 <드론인증센터 홈페이지(www.dcc.kias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

▪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0호).

2.3. 드론 조종자 증명

2.3.1.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조종자 증명”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조종자 증명대상	최대이륙중량 기준				
	250g 이하 (완구용)	250g 초과 2kg 이하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X	O (4종)	O (3종)	O (2종)	O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본문).

▹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단서].

드론 조종자 증명의 종류

▪ 드론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국가자격시험(lic.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2항).

조종자 증명 대여 금지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6조제3항제4호).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위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조종자 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드론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6.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7.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9.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0.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1. 드론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다만, 위 1., 4., 5., 10. 및 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론 조종자 증명이 취소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단서).

3. 드론 비행하기

3.1. 드론 비행승인

3.1.1. 비행승인 신청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 드론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 다음의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 위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보장, 국가방위,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대통령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휴전선·원전 주변)

※ 이를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

※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드론 비행승인

다음에 해당하는 군 관할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및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국방부, 2023. 8. 1.) 제9조제4항].

비행승인	비행 금지구역(P)	비행 제한구역 (R)	민간 관제권 (반경 9.3km)	군 관제권 (반경 9.3km)	기타지역(고도150m 미만)
국방부	O*	O R-75 (수도권지역)	X	O	X
국토교통부	O**	X	O	X	X
공통사항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 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2)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3)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 국방부: P518, P73, P61A, P62A, P63A, P64A, P65A**

**** 국토교통부: P61B, P62B, P63B, P64B, P65B**

<출처: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

※ 드론 비행 전 스마트폰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레디투플라이 (Ready to fly)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

※ 그 밖에 드론공역(UA,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은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제2호 및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5호).

3.1.2. 특별비행승인 신청

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의 비행을 할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 대상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참조).

-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 드론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 드론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 드론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드론에 한정)
-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드론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

특별비행승인 절차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접수·선람	→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 결과 송부	종합검토	→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Q1. 야간비행에 속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일출·일몰(계절별로 상이) 시각으로 주·야간시간을 구분하며, 일출 전과 일몰 후부터는 야간에 속하므로, 일반 드론비행은 금지됩니다.

Q2. 가시권 밖 비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거리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전후좌우 인식)가 확인되지 않는 거리를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크기·기상상황 등에 따라 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뒤로 비행하는 등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장애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드론특별비행승인-FAQ>

※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의 예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다음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제1항).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산림 방제(防除)·순찰

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 테러 예방 및 대응

11. 그 밖에 위 1.부터 10.까지의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위반 시 제재

▪ 드론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7호).

3.2. 드론 항공촬영

3.2.1. 항공촬영 신청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

▪ 항공촬영 금지시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6. 1. 1.) 제5조제1항].

▪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할때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2항).

▪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할 경우에는 항공촬영 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3항 및 붙임 1).

>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 A. 아니요,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 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출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민원 시스템 안내-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항공촬영 금지시설

▪ 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을 금지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3.3.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3.3.1.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4.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6.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조종자 유의사항

▪ 드론 조종자는 비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드론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드론에 대하여 진로 양보

▹ 드론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다만, 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드론 조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5항).

1. 비행 전에 해당 드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해당 드론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행할 것
3.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드론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 비행 시작·종료시간, 이륙·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6호).

Q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1.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정책자료-정책 Q&A>

Q2.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2. 드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드론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1호 참조).